

○ 직업전환 평가 기준표

※ 기준표에 기재된 배점 가능한 최소 경력보다 낮은 경우 0점 처리

※ 총 합계 점수가 40점 미만일 경우는 승인 불가

※ 무용과 졸업 이후 경력부터 산정 가능

항목			검 토기 준	배 점
정량 평가	기준 소득별 지원 내규	기준 중위소득분위	·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	40
			·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	25
			· 기준 중위소득 100% 미만	10
			· 기준 중위소득 100% 이상	5
	경력별 지원 내규 (택 1)	무용수 활동 및 안무 활동 경력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8년 이상	40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6년 이상~8년 미만	30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4년 이상~6년 미만	20
			· 전문무용수활동 및 안무경력 2년 이상~4년 미만	15
		무용 교육 활동 경력	· 무용교육활동경력 10년 이상	40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8년 이상~10년 미만	30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6년 이상~8년 미만	20
			· 무용교육활동경력 4년 이상~6년 미만	15
정성 평가	교육 계획	직업전환 교육 계획/ 적정성	· 신청 시기 및 내용이 지원사업 목적에 적합한가?	10
			· 직업전환을 위한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(희망직업, 교육세부프로그램)	5
		직업전환 의지 및 노력도	· 교육 수료 후 향후 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한가? (향후계획, 실현가능성)	10
			· 직업전환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였는가?	5

※ 자격 요건 및 기준중위소득에 따른 가산점

1급~3급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)	20	4급~6급 장애인 (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)	10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임신 또는 출산(입양), 육아 및 가사로 경력이 단 절된 무용예술인	10	부상을 당한 무용예술인	10
--	----	--------------	----
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준중위소득 30% 이하	30	차상위계층 또는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	10
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

기준 중위소득분위(구간) 경계값
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'기준 중위소득'

(단위 : 원)

가구원수	기준 중위소득	4분위 80% 이하	3분위 60% 이하	2분위 50% 이하	1분위 30% 이하
1인 가구	2,564,238	2,051,390	1,538,543	1,282,119	769,271